

Ⅲ.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우유 영양가 시험결과에 대해 허위사실의 반박광고를 게재, 원고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이 인정된다

춘천지방법원 1991. 2. 26.자 판결(90고단108)

事實概要

춘천지방법원의 형사단독 지대운 판사는 1991. 2. 26. 우유품질을 둘러싼 신문광고와 관련,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파스퇴르유업 대표 피고인 (· 강원도 횡성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 판사는 판결문에서 「파스퇴르유업측이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우유품질 분석결과 발표에 대해 중앙일간지에 실은 반박광고는 광고의 기법상 일반인이 보면 소비자보호원의 견해가 모두 거짓으로 판단할 우려가 높아 소비자보호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고 그 업무를 방해한 것이 인정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파스퇴르유업(주)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시판 우유를 수거 살균방법에 따른 영양가 등에 관해 시험한 결과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를 발표하자 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1989. 8. 29.자 세계일보 3면 하단에 마치 소비자보호원이 장난으로 소비자를 우롱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광고를 게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判 決 文

사 건 : 90고단108 가. 환경보전법 위반

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다. 초지법 위반

- 라. 건축법 위반
- 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바. 업무방해

피 고 인 : 최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 대표이사

19 생()

주거 강원

본적 서울

검 사 : 이 중 환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건 공소사실 중 1989. 8. 23.자 서울신문 및 1989. 8. 25.자 동아일보에 게재한 광고에 의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부분은 무죄.

이 유 :

범죄사실 : 피고인은,

1. 1988. 7월 초순 경 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받아 조업중인 위 파스퇴르유업(주) 내에 환경청장의 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세척시설, 윤활유 교환도크, 이화학 실험실 등 배출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조업을 하고,
2. 1989. 5월 중순 경 강원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1331의 11 답 1,667평방미터 중 662평방미터와 같은 리 1331의 23 답 1,232평방미터 중 571평방미터 등 합계 1,233평방미터의 상대 농지를 주차장 용도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수산부 장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성토하여 이를 전용하고,
3. 같은 날 위 같은 리 1331의 11, 같은 리 1331의 23 지상 위에 횡성군수에게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함석, 합판 등을 사용하여 건평 65.61평방미터의 공사용 가설건물 1동을 축조하고,
4. 같은 해 9. 16. 위 같은 리 1295 전 1,098평방미터 중 687평방미터, 같은 리 1296 전 1,289평방미터, 같은 리 1297 전 3,068평방미터 중 2815평방미터 등 합계 4,791평방미터의 상대 농지를 택지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수산부 장관의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착하는 등 이를 전용하고,

5. 같은 날 위 같은 리 산 198의 10 목장용지 5,965평방미터 중 1,396평방미터의 초지를 택지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사의 초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지작업을 하여 이를 전용하고,

6. 같은 해 9. 18. 부터 같은 달 30. 까지 사이에 위 같은 리 1295, 같은 리 1296, 같은 리 1297 지상 위에 횡성군수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평 365.49평방미터와 전평 234평방미터의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 각 1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철근 콘크리트로 기초공사를 완료하여 이를 건축하고,

7. 같은 해 9. 30. 위 파스퇴르유업(주)에서 조업을 하며 배출시설인 세척설비에서 배출 허용기준에 부적합한 폐수 약 2톤을 하수구에 유출시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 하지 아니하고,

8.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시판우유를 수거하여 우유의 살균방법에 따른 영양가등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89. 8. 18. 언론매체를 통하여 시험대상 우유 전제품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며 시험항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영양가등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검사결과를 발표하자 평소 저온살균 방법으로 제조하는 파스퇴르유업(주)의 우유제품이 초고온 살균방법으로 제조하는 타사제품 우유제품에 비하여 영양가 면에서 우수하다는 홍보를 하여온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과 상치되는 위 검사결과 발표에 불만을 가지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동 회사 홍보담당자인 공소의 윤

을 통하여, 1989. 8. 29.자 중앙일간지인 세계일보 3면 하단에 「정부예산으로 움직이는 소비자보호원이 또다시 터무니 없는 장난으로 소비자를 우롱한다면」등 마치 소비자보호원이 장난으로 소비자를 우롱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후 18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9. 전항 기재와 같이 각종 일간신문등에 광고를 게재하고 전국 각지에 배부케 하여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시책의 연구 및 건의, 물품 및 용역의 가격, 품질, 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의 실시 등 소비자보호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 1 내지 7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원주환경지청장, 황성군수 작성의 각 고발장 및 고발사항 면적변경 통보, 폐수시험성적서 통보, 초지전용허가신청서 반려 공문 중 판시 1 내지 7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민 , 박 , 유 , 심 , 이 작성의 각 진술서 중 판시 1 내지 7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조 의 판시 8, 9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1989. 8. 23.경 윤 으로부터 판시 광고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검사작성의 윤 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 8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

1. 환경보전법(법률 제3078호) 제66조 제1호, 제15조 제1항(판시 1 사실) 제16조의 2 제1항(판시 7 사실)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조 제1항(판시 2, 4 사실) 초지법 제30조, 제23조 제1항(판시 제5 사실) 건축법 제56조 제1호, 제47조 제2항(판시 3 사실) 제55조 제2호, 제5조 제1항(판시 6 사실)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판시 8 사실) 제314조(판시 9 사실) (판시 3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법정미 가장 무거운 판시 제8죄 중 범죄일람표 제1의 죄에 경합범 가중하되 판시 제3죄의 벌금형을 병과)

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인은 판시 제8 사실은 진실에 기초한 것이므로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따라서 판시 8, 9 사실은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의 외부적 명예이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그것이 학술잡지라든가 전문잡지에 실리는 경우와 일반대중이 보는 일간지에 「광고」로 실리는 경우는 위 조문상의 「허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가령 이 건과 같이 어떤 사람의 발표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그 발표 내용에는 들어있지 아니한 내용을 임의로 삽입하거나 또는 그 내용을 과장, 그 내용으로부터 어떤 사실을 임의로 추측하는 것 등의 내용이, 전문지에 실린 경우에는 그것이 자신의 이론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한 과정으로 보여질 수 있으므로 이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허위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전체 글의 내용과의 관계에서 허위여부를 판단

하여야 하며, 따라서 그것이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해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할 수 있는 반면, 이러한 내용이 일간지에 「광고」로 실리면서 이러한 자의에 의한 삽입, 과장, 추측 등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그 부분만을 큰 글로 실어 강조하는 경우에는 광고의 특성(일반인은 강조된 부분만으로부터 대부분의 정보를 얻거나, 강조된 부분에 비추어 다른 부분을 이해하려 하는 것이 통례이다) 또는 광고주가 그러한 광고로부터 얻으려는 이익과 책임의 비례의 원칙(광고주는 사실상 그 강조부분으로 광고의 효과를 보려고 하면서도 책임은 강조부분만이 아닌 전체 글과의 관계에서만 지려고 한다면 이는 행위에 따른 책임의 원칙 및 형평에 맞지 않는다)을 고려하여 일반대중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점 및 이 강조부분에 중점을 두어 전체 글을 해석하는 방법을 종합하여 그 허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건에 있어 설령 전체적으로 보아 광고의 내용에 일부 진실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삽입, 과장, 추측 등으로 강조한 부분에 중점을 두어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소비자보호원의 발표내용을 구체적, 이론적 기초에 근거하여 반박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 발표내용과는 관계가 없거나, 거리가 있는 임의의 과장, 추측, 삽입 등의 내용에 중점을 두어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 위 광고내용을 보면 소비자보호원의 견해는 모두 거짓 또는 사실의 왜곡이라고 밖에는 달리 판단할 수 없게 하고 있으므로,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는 허위의 사실로 위 소비자보호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 이 건 공소사실 중 1989. 8. 23.자 서울신문 및 1989. 8. 25.자 동아일보에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여 출판물에 의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부분의 요지는 별지와 같다. 그런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의 광고문안의 내용인, 저온과 고온우유의 영양가치 별 차이 없다는 「해괴망측」한 발표를 하였다는 부분 또는 소비자보호원 분석의 「허구성」이라는 부분만으로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991. 2. 26.

판사 지 대 운

〈별지〉

(피고인은)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시판우유를 수거하여 우유의 살균방법에 따른 영양가등에 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89. 8. 18. 언론매체를 통하여 시험대상 우유 전 제품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며 시험 항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영양가등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검사결과를 발표하자 평소 저온살균방법으로 제조하는 파스퇴류유업(주)의 우유제품이 초고온살균방법으로 제조하는 타사제품 우유제품에 비하여 영양가 면에서 우수하다는 홍보를 하여 온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과 상처되는 위 검사결과발표에 불만을 가지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동 회사 홍보담당자인 공소의 윤을 통하여, 1989. 8. 23.자 서울신문 및 1989. 8. 25.자 동아일보에 소비자보호원이 허구적인 분석으로 저온과 고온우유의 영양가치 별 차이 없다는 해괴망측한 발표를 하였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

〈범죄일람〉

순번	일자	신문명	내용
1	89. 8. 28.	동아일보 1면	소비자보호원이 사과도 삶아 먹어야 비타민 씨가 증가한다는 식으로 분석을 하였으며 정부예산으로 움직이는 소비자보호원이 터무니없는 장난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동원의 엉터리 데이터 때문에 국민이 좋은 우유를 마실 기회를 놓친다는 내용
2	89. 8. 29.	세계일보 3면	
3	89. 8. 30.	조선일보 3면	
4	89. 9. 7.	한국일보 1면	
5	89. 8. 30.	조선일보 2면	소비자보호원 직원이 연습삼아 취미삼아 부정확하고 의미없는 데이터를 공표하여 사회보건문제와 연관시킴으로써 소비자를 현혹시켜 국민이 좋은 우유의 선택의 길을 잃고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는 내용
6	89. 9. 1.	한국일보 3면	
7	89. 9. 5.	동아일보 3면	
8	89. 9. 8.	국민일보 3면	
9	89. 9. 1.	한국일보 2면	소비자보호원 직원이 과학술어조차도 자기 형편대로 해석, 사용하여 국민의 혈세로 움직이는 경제기획원 산하단체인 소비자보호원이 상부기관인 경제기획원이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비위를 맞추는 데 급급하여 국민보건에 해를 줄 염려가 있다는 내용
10	89. 9. 5.	동아일보 2면	
11	89. 9. 8.	국민일보 2면	

〈범죄일람〉

12	89. 9. 6.	동아일보 1면	원유가 일반우유에 비하여 파스퇴르유업에서 사용하는 것이 월등하게 좋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는데 소비자보호원 관계직원은 분석을 통하여 좋은 우유에 비타민 씨가 적고 나쁜 우유에 비타민 씨가 많다. 비타민 씨가 많은 우유를 저온처리 했을 경우에 비하여 비타민 씨가 적은 우유를 고온처리 했을 때 비타민 씨가 많다고 하였다는 내용
13	89. 9. 11.	경향신문 3면	
14	89. 9. 12.	조선일보 1면	
15	89. 9. 11.	경향신문 2면	민간단체가 아닌 경제기획원 산하단체인 소비자보호원의 직원이 우유와 요구르트를 혼돈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로 인하여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내용
16	89. 9. 13.	조선일보 3면	
17	89. 9. 13.	조선일보 2면	소비자보호원 직원이 우유성분에 관하여 장난같은 무기분석데이터를 내놓고 마치 이것을 우유의 생명인 칼슘, 단백질 등 영양과 관계되는 양 발표하였다는 내용
18	89. 9. 15.	동아일보 2면	소비자보호원이 엉터리 데이터를 과학의 이름을 빌려 악용하고 있으며 소비자들로부터 「경제기획원 산하단체이면서 이러한 사회악을 저지르는 것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등의 전화 및 충고가 있을 정도로 사회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

적시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사실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다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 5. 26.자 판결(91고단6158)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 5. 25.자 판결(92노4099)

대법원 1993. 9. 24.자 판결(93도1732)

事實概要

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만호 대법관, 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1993년 9월 24일 피고인 한

국권투위원회 회장 이 과, 부회장 심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동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도 사실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고소인인 조 , 유 씨는 한국권투위원회 회원으로서 위 위원회 대의원 총회를 앞두고 이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기하겠다는 등의 언동을 하고 피고인들을 상대로 직무집행가처분신청을 했고, 피고인들은 고소인들을 위 위원회에서 제명한 다음 고소인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기관에 배포,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각 벌금 1백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자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 항소했고, 검사측에서도 죄명을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변경하여 항소했다. 2심에서도 피고인들에게 각 1백만원의 벌금을 선고하면서, 허위사실적시 혐의에 해당하는 「고소인들이 2천만원을 갈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2심 판결에도 불복 상고했다.

1審 判 決 文

사 건 : 91고단6158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 고 인 : 이 , 심

주 문 : 피고인들을 각 벌금 1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1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범죄사실 : 피고인 이 은 사단법인 한국권투위원회 회장, 같은 심 은 전 사단법인 한국권투위원회 사무담당 부회장으로서 세계권투협회 부회장인 바,

피고인들은 위 위원회 회원인 피해자 조 , 유 가 1990년 5월 30일 개최된 위 위원회 대의원 총회를 앞두고 이 회장에 대하여 불신임안을 제기하겠다는 등의 언동을 하

고 같은 해 12월 27일 피고인들을 상대로 회장,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자 동인들을 위 위원회에서 제명한 다음 이를 각 언론사에 홍보하기로 공모한 다음 동인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1991년 1월 21일 14시 30분 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삼정빌딩 5층 위 한국권투위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심 이 「유 , 조 는 1990년 5월 30일 한국권투위원회 총회를 앞두고 이 회장은 물러나야 한다는 등 갖은 협박을 하여 동인등으로부터 2천만원을 갈취하였으며 한국권투위원회 상벌위원회에서는 참석위원 전원이 이들의 제명에 동의하였고 검찰에 이를 고발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위 상벌위원회에 제출한 공소외 의 3명의 진술서와 함께 동아일보사, 중앙일보사, 한국일보사, 조선일보사, 스포츠서울신문사, 스포츠조선신문사, 일간스포츠사 등 14개 언론기관 프로권투 담당기자들에게 모사전송기를 통해 송부하여서 1991년 1월 24일 동아일보 15면에 『끓을 대로 끓은 주먹세계, 이 회장 주변 금품수수 잦아, 유 씨등 금전갈취혐의』란 제하에 「한국권투위원회는 21일 유씨와 조 (본명)씨를 협박에 의한 금전갈취혐의로 제명하고 이튿날 서울지검에 형사고발했다. 한국권투위원회는 유, 조씨가 지난해 대의원 총회에 앞서 이 회장 사퇴주장을 펴며 대의원을 포섭하다 송모 씨등을 통해 대의원 총회에 회장 불신임안을 제출치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 해 6월 1일과 6일 두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는 취지의 기사가 1991년 1월 23일 스포츠서울에 『한국권투위원회 권투계 분란조장 유 , 조 씨 제명』이란 제하의 「한국권투위원회는 위 2사람이 지난해 5월 30일 대의원 총회를 앞두고 이 회장을 불신임, 성토했다는 등 협박을 일삼아 왔고 2천만원을 갈취했다는 이유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는 취지의 기사가 각 게재되게 하여서 출판물에 의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 1. 증인 유 , 조 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1. 검사 작성의 유 , 조 에 대한 진술조서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1. 김재천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동아일보 사본(4백34쪽), 스포츠서울(4백36쪽), 상벌위원회 회의록 사본(4백59 내지 4백65쪽)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 각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0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언론기관에 공표한 것은 한국권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언론기관에 알리기로 한 동 위원회 출입기자들과의 협약에 따라 비리와 비행을 행하는 위 피해자들에 대한 징계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밝혀야 하기 때문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1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등에 의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309조 제1항이 규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이 사건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에 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이 없다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5. 26.

판사 이 진 성

2審 判 決 文

사 건 : 92노4099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변경된 죄명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피 고 인 : 1. 이 한국권투위원회 회장

주거 서울

본적 서울

2. 심 한국권투위원회 부회장

주거 서울

본적 전남

항 소 인 :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 이 용

변 호 인 : 변호사 나 채 규(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 5. 26. 선고, 91고단6158 판결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첫째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소인 유 , 조 (일명, 조)를 제명 결정한 것은 적법하게 선출된 한국권투위원회 집행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고소인들에 대하여 한국권투위원회 정관과 상벌규정에 따라 행한 적법한 업무집행행위로서 피고인들에게는 명예훼손의 범의나 위 고소인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둘째 피고인 이 은 한국권투위원회 회장으로서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징계 결정이 난 후에 피고인 심 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았을 뿐이고 언론사에 대한 징계내용 통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심 도 사전에 언론사에 통보를 직접 지시한 사실은 없고 다만 위 위원회 총무과장 고병일이 언론사에 징계내용을 통보한 후 올린 사후결재를 추인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은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업무집행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며, 그 제3점은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그런데,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시에 이르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심판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적지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그 적용법조도 함께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여 본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결국 변경 전의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터잡은 원심판결은 위 각 항소이유에 관하여 나입가 판단할 필요없이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본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인 허위사실적지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보고, 변경 전과 같은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바, 본원이 인정하는 그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같은 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0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징계 결정사실을 언론기관에 공표한 것은 한국권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언론기관에 알려주기로 한 동 위원회 출입기자들과의 협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업무집행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비리와 비행은 행하는 고소인 에 대한 징계사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한국권투위원회와 위 위원회 출입기자단 사이에 한국권투위원회에서 결정된 국내, 국제 경기 및 각종 행사계획, 인사 등에 관하여 이를 통보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협약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어떤 행위가 형식적으로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국법질서 전체의 이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정당행위로 보아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어느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앞서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에 위 고소인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 등에 의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이 없고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함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사실은 고소인들이 피고인 이익순으로부터 금 20,000,000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고소인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함에 있는 바, 피고인들은 고소인들이 1990. 5. 30. 개최된 판시 한국권투위원회 총회를 앞두고 동 위원회 회장인 피고인 이 무능하므로 해임하여야 한다거나 총회에서 불신임안을 내겠다는 등의 언동을 하면서 은근히 금전을 요구하는 눈치를 보이므로 피고인 이 이를 무마하고 총회를 무사히 끝내기 위하여 공소외 을 통하여 금 20,000,000원을 고소인들측에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모사전송기로 언론사에 보낸 고소인들이 1990. 5. 30. 한국권투위원회 총회를 앞두고 피고인 이익순을 협박하여 그로부터 금 20,000,000원을 갈취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는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고 변소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고소인들이 피고인 으로부터 금 20,000,000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 의 원심 법정 및 검찰, 경찰에서의 각 진술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 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일부 기재가 있는 바, 위 각 증거는 다음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들의 당심에서의 각 진술, 증인 의 당심에서의 각 진술, 사법경찰관 작성의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1990. 5. 30. 한국권투위원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고소인들은 동 위원회 회장인 피고인 이 이 무능하여 자격이 없으니 물러가야 하고 정기총회에서 그 비리를 폭로하여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하겠다는 등의 언동을 하고 다녔고, 이를 전해 들은 피고인 이 은 위 위원회 소속 통일프로모션 대표인 공소외 김 에게 고소인들의 불만사항이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지시한 사실, 이에 1990. 5. 27. 경 고소인 유 를 접촉한 위 김 및 정례프로모션 대표 공소외 최 에게 위 고소인은 피고인 이 이 무능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자격이 없는 회장으로 총회에서 회장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고소인 유 가 1988. 5. 경 추진한 무주택 권투인을 위한 재개발구역내의 아파트 입주권 취득문제도 피고인 이 의 약속불이행으로 인하여 실패하여 동 고소인이 30,000,000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보았으므로 이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은근히 금전을 요구한 사실, 위 무주택 권투인을 위한 재개발구역내의 아파트 입주권 취득 문제는 재개발구역내의 무허가 건물 소유자는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고소인 유가 피고인 이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무주택 권투인들 명의로 광명시 하안동 재개발구역내의 무허가 건물 15채를 매수하였다가 실제 거주자가 아니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주택공사의 방침에 따라 입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 이이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질 필요는 없는 것이었으나, 위 유 등의 불만사항을 전해들은 피고인 이은 총회에서 고소인들이 회장등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퇴진 운동을 벌이는 등 소란을 피워 회장으로서의 명예가 실추되고 회원들의 신임을 잃게 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 김에게 위 유가 주장하는 손해 중 일부를 보상해주고 총회를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한 사실, 이에 위 김과 최는 위 유에게 금 10,000,000원을 줄 터이니 총회를 무사히 치를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위 유는 고소인 조와 협의하고 나서 이를 거절하였고, 그후 같은 달 28. 다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위 최는 총회 당일인 같은 달 30. 고소인 유에게 금 20,000,000원을 줄테니 총회를 원만히 치를 수 있도록 조용히 있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위 유는 이를 승낙하고 총회에서 유인물을 낭독하려는 계획 등을 포기하여 위 정기총회는 별다른 사고 없이 끝난 사실, 그후 위 최로부터 위와 같은 협상결과를 전해들은 위 김은 총회 이후인 같은 해 6. 2. 금 10,000,000원을 같은 달 4. 금 10,000,000원을 각 위 유에게 교부하여 합계 금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소인들이 위 한구권투위원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무주택 권투인을 위한 아파트 입주권 취득사업으로 인한 손해 명목의 일정한 금원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총회장에서 피고인 이의 비리를 폭로하고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등 소란을 피울 듯한 태도를 보여 그와 같은 사태로 명예가 실추되고 신임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한 피고인 이익순으로부터 그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위 손해금 중 일부 명목으로 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들이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에 고소인들이 위 총회를 앞두고 피고인 이은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등 협박을 하여 그로부터 금 20,000,000원을 갈취하였다고 표현하였다 하더라도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5. 25.

재판장 판사 이 홍 복
판사 안 영 진
판사 서 정 결

大法院 判決文

사 건 : 93도1732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변경된 죄명 :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피 고 인 : 이 외 1인

상 고 인 : 검사, 피고인들

변 호 인 : 변호사 나 채 규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 5.25. 선고, 92노4099 판결

주 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허위사실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음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동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사실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1993. 9. 24.

□

재판장 대법관 박 만 호

대법관 김 상 원

주 심 대법관 윤 영 철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문기자에게 설명, 허위기사가 게재되도록 한 것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3. 1. 14.자 판결(91고단4554)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 12. 2.자 판결(93노1025)

대법원 1994. 4. 12.자 판결(93도3535)

事實概要

대법원 제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1994년 4월 12일 피고인 미술작가 이 씨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기자에게 허위사실을 설명하여,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신한 신문기자로 하여금 허위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피고는 작품전시 및 판매 일체를 미화랑을 통하여만 한다는 전속계약을 체결한 미화랑의 전속계약작가로서 활동하던 중 다른 화랑에서 개인전을 개최하려다 미화랑측의 계약상 권리주장으로 개인전이 무산되자 이 사건 피해자인 미화랑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조선일보 기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설명하여 조선일보 1991년 8월 1일자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보도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성기문 판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은 이에 불복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제6부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1審 判決文

사 건 : 91고단455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 고 인 : 이

주거 서울

본적 경남

검 사 : 정 대 표

변 호 사 : 변호사 박 희 태, 홍 석 한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

범죄사실 : 피고인은 미술작가인 바, 무명작가 시절인 1988. 7. 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미화랑 대표인 피해자 이 과 1993. 7. 30.까지 5년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월 10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으로 작품활동을 후원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작품전시 및 판매 일체를 미화랑을 통하여만 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4차례의 개인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중견작가로서 성장하게 되자 1990. 3.경 열린 동경아트엑스포 전시회에 피고인의 작품을 출품한 이후부터 위와 같은 전속계약에 불만을 품고 계약해지를 주장해 오던 중 1991. 7. 26.경부터 같은 해 8. 6.까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현대화랑에서 개인전을 개최하려다 피해자의 위 전속계약상 권리주장으로 개인전이 무산되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1991. 7. 27. 14:00경 서울 중구 태평로 1의 61 소재 조선일보 문화부에 찾아가, 사실은 동경아트엑스포에서 피고인의 작품이 약 8,300여만원에 판매되어 그후 함께 정산을 하였고, 전속 계약시 재료비를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작품을 편취한 바도 없고, 피고인이 타 화랑에서 개최하려는 전시회를 고의로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문사 문화부 기자인 공소의 김 에게 「1990. 3.경 동경아트엑스포에서 1억 5,000만원의 작품판매대금이 생겼으나 3,000만원을 받았을 뿐이고, 피해자가 대주기로 했던 재료

비를 처음 6개월 동안만 대주는 등 후원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않아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작품을 부당하게 편취했고, 다른 화랑에서 열릴 예정이던 피고인의 전시회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설명하고, 민사소송소장사본, 전속 계약서 사본 등의 보도자료를 교부하여 위 김 으로 하여금 1991. 8. 1.자 조선일보 11면에 위와 같은 허위의 기사를 게재하게 하여 그무렵 전국의 위 신문 독자들에게 보급되게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1. 작성의 각 진술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조선일보 신문기사 사본의 기재(수사기록 15면)

적용법조 :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동기 참작)

1993. 1. 14.

판사 성 기 문

2審 判決文

사 건 : 93노1025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 고 인 : 이

주거 서울

본직 경남

항 소 인 : 피 고 인

검 사 : 신 중 대

변 호 인 : 변호사 이 문 재

원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3. 1. 21. 선고, 91고단 4554판결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고소인 이 과 피고인과의 관계를 공소외 김 기자에게 설명한 것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또한 진실이거나 진실과 다소 다른 점이 있더라도 피고인으로서의 이를 진실이라고 확신한 사실들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1) 비방할 목적

피고인이 위 김 에게 아래 (2) 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게 된 경위는, 피고인이 1990. 6. 30. 위 이 과의 전속계약의 해제를 선언한 후 1991 7. 26.부터 예정된 현대 화랑 전시회가 이 의 방해로 취소되자 언론계에서 관심을 갖고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던 중, 1991. 7. 26. 부산일보에, 같은 달 31, 일간스포츠에 같은 기사가 실려 위 내용이 세간에 알려지자, 위 김 이 전화로 연락하여 잠시 만나보고 싶다고 하면서 관련자료가 있으면 가지고 나오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은 진상을 알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신문사로 위 김 을 찾아가니, 위 김 이 스포츠신문에 난 것이 사실이냐고 가볍게 물어보아 피고인은 대충 맞다고 대답하였을 뿐이고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눈 것이 없으며, 위 김 이 가져다 달라고 요청한 소장사본과 위 이 이 재계약 요청을 하면서 제시한 계약서를 전하여 주고 왔을 뿐으로, 위 이 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이 이 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김 에게 찾아가 기사 재료를 제공하였다고 판시한 것은 증거없이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이 위 김 에게 설명한 사실의 허위여부 및 허위사실인지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인 위 김 을 찾아가 설명한 사실, 즉 ① 1990. 3.경 동경아트엑스포에서 1억5천만원의 작품판매대금이 생겼으나 3000만원만 받았을 뿐이고, ② 피해자 이 이 대주기로 했던 재료비를 처음 6개월 동안만 대주는 등 후원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며, ③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작품을 부당하게 편취하였고, ④ 위 피해자가 다른 화랑에서 열릴 예정이던 피고인의 전시회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은 진실 그대로이며 설령 진실과 다소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의 이를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음에도 원심은 증거가치를 잘못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릇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이 원심판결과 같이 위 이 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문사 기자인 위 김 에게 이야기 하였다 하더라도, 조선일보에 이진 기사를 게재한 위 김 은 문화부 소속 미술담당 기자로서 그 기사가 어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인지 아니면 공익 특히 작가 전속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보탬이 되는 기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자로서 그 기사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위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그 기사를 게재한 기자나 신문사 자신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제보자를 위 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의율 처단한 것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의 주체를 잘못 해석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인한 위 이 의 작품전시 및 방해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자는 피고인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2. 당원의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신문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그 기사를 게재한 기자나 신문사 자신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제보자를 위 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이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오로지 그 신문사의 내부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나, 기사가 신문지상에 게재된 이상 이 기사의 기재는 기사재료 제공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위 기사재료를 제공한 제보자, 즉 피고인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당시에 이르러 위 김 기자가 다른 신문에 피고인과 이 에 대한 기사가

난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만나자고 하면서 관련자료를 가져올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은 진상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위 김 기자를 찾아가 그의 질문에 간단히 응한 다음 가지고 간 소장사본등 자료만 준 것으로, 위 이 을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히 조사 채택한 증거들 특히 검찰에서 피고인은 「화랑의 횡포로 인하여 작가가 작품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널리 국민들에게 알려지도록 고의적으로 신문과 텔레비전에 보도가 되도록 하였다.」 「이 이 신문, 텔레비전 보도로 인하여 명예가 떨어지고 화랑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은 명예가 실추되고 화랑 운영에 지장이 있어도 감수해야 할 그러한 사람이다.」 「화랑의 횡포로 인하여 작가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저의 한 몸 희생되는 것을 감수하고 이 의 횡포를 신문과 텔레비전에 보도하였다.」 「다시는 화랑이 작가에게 횡포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기자에게 보도를 요청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 진술에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속작가인 피고인과 화랑주인인 위 이 사이에 분쟁이 생긴 결과, 위 이 에 의하여 피고인이 다른 화랑에서 열려던 전시회 개최가 좌절되자 민사소송 제기와 동시에 피고인이 이 을 비난하는 자료를 위 김 에게 제공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위 이 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이 설명한 위 4가지 사항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가) 동경아트엑스포에서의 판매대금문제

피고인은 1990. 3. 24부터 4. 3.까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동경아트엑스포에 피고인의 작품 25점 528호(이 이 별도 보관하던 작품 4점 포함)를 출품하여 그 전부를 공소외 허에게 판매하고, 귀국후 위 이 이 다시 일본으로 가서 위 판매대금을 일화로 받아와 한국에서 한화로 환전한 후 그 중 3천만원을 피고인에게 지불하면서 작품 전부의 판매대금이 8,300여만원이라고 이야기 하고 이를 전제로 계산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출품에 앞서 호당 10만엔 이하로 받아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하였고, 이 이 인수증이나 보관증 또는 환전증서를 피고인에게 보이지 않은 점, 부산일보 기자인 배 에게 위 이 이 판매대금으로 1억8,000만원을 받아왔다고 이야기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작품 판매대금은 적어도 금 1억5천만원은 상회할 것이고, 설령 위 판매대금이 위 이 의 주장대로 금 8,300여만원 정도라고 하여도 피고인으로서 위 이 이 판매대금이 1억8천만원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공소외 배 기자의 말을 듣고 판매대금이 적어도 1억5천여만원은 넘을 것이라는 생각에 위 김 기자에게 그러한 취지로 말을 한 것이므

로 피고인이 위 김 기자에게 말한 것은 사실이거나 혹은 사실이라고 믿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판기록에 편철된 작품리스트 사본(제689정), 수사기록에 편철된 정산서 사본(제10-12정), 피고인의 출판작 명세서(제38정)의 각 기재 및 당심에서의 이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동경아트엑스포에 출판한 작품은 모두 21점이고 거기에다가 화랑 소유인 피고인 작품 4점을 보태어 총 25점이 출판되었는데, 피고인이 출판한 작품 중 20점 및 화랑 소유로 출판한 4점(100호 1점, 30호 1점, 12호 1점, 10호 1점)등 합계 24점이 공소의 허에게 일괄 판매되어 그 총 판매대금이 금 26,500,000엔이었던 사실, 당시 환율을 4.35로 잡아 환산한 금 115,275,000원 중 화랑 소유작품 4점 대금 31,572,850원을 제외한 피고인 출판작품 20점의 판매대금은 금 83,702,150원으로 계산하여, 그중 절반인 금 41,860,750원을 피고인 몫으로 피고인과 위 이 사이에 확정된 후, 그동안 피고인이 위 이 으로부터 가불하여 간 금 12,257,750원을 공제하면 최종적으로 피고인 몫으로 돌아갈 판매대금은 대략 금 3,000만원 정도로 계산하여 정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금 3,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도 피고인 몫으로 분배될 피고인 출판작품의 총 판매대금이 한화로 금 8,300여만원 정도라는 것을 알고 이에 따라 정산까지 하였음에도, 이를 1억5천만원 상당이라고 위 김 기자에게 말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그 이후에 위 배 기자로부터 위 이 이 총판매대금이 금 1억8천만원에 이른다고 하더라는 말을 듣고서 판매대금이 금 1억8천여만원에 이를 것이라고 확신하였으므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서도, 수사기록 제103정에 편철된 배태영 기자가 쓴 1991. 7. 29. 부산일보 기사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인이 1억8천만원에 팔렸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고, 공판기록 제338정에 편철된 공소부제기 이유고지서 사본에도 피고인 스스로 위 배

기자에게 그림 판매대금이 1억5천만원이라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1992. 1. 18.자 탄원서(공판기록 제16-28정)에서 배 기자로부터 들은 경위를, 부산일보 기사를 읽어보니 피고인이 작품판매대금이 1억8천만원이라고 발설한 것 같이 기사화가 되어 있어서 이를 피고인이 위 배 기자에게 확인해 보니 작품대금이 1억8천만원이라고 말한 것은 이 인데 피고인이 발설한 것 같이 오보되었다고 해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료로 배 기자가 쓴 경위서라고 공판기록 제34정에 편철된 메모지를 제출하였으나, 위 부산일보 기사가 보도된 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91. 7. 29.이고, 피고인이 조선일보 기자인 위 김 을 만나 판매대금이 1억5천여만원에 이른다고 말한 날은 이를 전인 같은 달 27. 이어서 피고인이 신문 기사를 본 후 부산일보 배 기자에

확인하여 위 김 ○○에게 판매대금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는 것은 시간상 맞지 않아 그 경위에 대한 변소가 합리성을 잃고 있는 점, 이 ○○은 위 배 ○○ 기자에게 피고인 주장과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재료비 문제에 대하여

피고인은 1988. 7. 30.자 계약체결 당시 위 이 ○○이 피고인의 작품 재료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문서에 명문화시키고자 하였으나 위 이 ○○이 계약서 제2항의 「이 ○○이 피고인의 작품제작 및 작가활동의 제반 관리와 후원자로서 계약한다」는 규정 에 포함되니 걱정말라고 하여 의심없이 위 이 ○○ 제안대로 구두로만 약정한 채 계약서상에 명시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판기록 제429정 및 제647정에 편철된 재료비 정산서, 내역서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속계약 후 1989. 8. 이전에 재료상 ○○○○으로부터 받아 쓴 물감대등이 합계 금 8,712,700원에 이르렀는데 위 이 ○○이 이를 대신 지불하였으나, 피고인은 1989. 8. 27. 위 이 ○○에게 위 재료비중 금 3,240,000원을 피고인의 그림으로 대물변제하고 나머지 재료비도 장차 피고인의 작품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속한 다음, 1989. 12.경 위 정산약속에 따라 나머지 재료비도 피고인의 작품으로 대물변제한 사실, 그후에도 피고인은 모든 재료를 피고인 자신이 사서 사용해 온 사실, 작가와 화랑의 전속계약의 경우 작품 재료는 작가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작가가 재료를 부담하는 것이 관례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전속계약 당시 재료비 부담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는 이상 재료비는 관례에 따라 작가의 부담이라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사용한 재료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림으로써 대물변제함으로써 재료비를 피고인이 부담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할 것이므로 재료비를 위 이 ○○이 최종적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그 이유없으나, 한편 이

건으로 문제된 조선일보 기사(수사기록 제15정)의 이 부분에 관한 기사를 보면, 그 기사내용은 연간 3천만원에 달하는 재료비를 화랑측에서 피고인에게 대주기로 약속하여 놓고 처음 6개월 동안만 대주는 등 후원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피고인이 주장한 것으로 요약되는데, 위 이 ○○도 검찰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하급의 물감을 쓰다가 위 이 ○○으로부터 고급물감을 쓰라는 말을 듣고 이 건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고급의 물감을 쓰게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이 너무 과다하게 물감을 구입하는 바람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처음 6개월간의 재료비는 위 이난영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결제하여 준 후 그 대신 그림으로 대물변제 받았으나, 그 이후는 재료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 스스로 물감을 구입하여 작품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여기 에다가 당심 중인 장호의 1989. 중순 경 피고인이 너무 물감을 많이 써서 위 이 이 재료 상인 박 에게 이제부터는 지급못하겠다고 통보하라고 하여 그 취지를 통보한 후 그 이 후부터는 재료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진술 및 공판기록 제57정에 편철된 박 의 인증 서 중 이 의 책임하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재료에 대하여 결제하기로 하여 재료대금은 이 이가 결제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재료 비의 최종 부담은 작가인 피고인이 하는 것이기는 하나, 전속계약 후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는 피고인이 물감비를 낼 능력이 부족하므로 우선 피고인이 재료상으로부터 물감을 공급받아 사용하면, 이 대금을 위 이 이 지급하고 차후 위 물감대는 피고인이 그림으로 대물변제하는 방식 등으로 해결하기로 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고, 그렇다면 전속계약일로부터 6개월동안만 재료비를 대어주고, 그 이후는 피고인이 비싼 물감을 과다하게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재료비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피고인 스스로 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한 것이 사실인 이상, 위 보도내용이 다소 과장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위 이 이 재료비를 제대로 대 주지 않아 작품활동을 제대로 못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보도내용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는 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작품의 편취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김 기자에게 이 이 작품을 편취하였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없고 단지 피고인이 건네 준 민사소장의 청구원인 중 작품비 횡령부분을 참고하여 기사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위 이 은 전속계약제를 악용하여, 작가전속화랑은 전속작가와 협의한 가격으로 작품을 판매하여야 하고 그 이하의 가격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협정가액으로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이 화랑가의 관례임에도 이 은 작품전시 때마다 협약가격의 절반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였으니 그 실제판매가격의 반액만 분배한다는 식으로 판매가격의 상당액을 착복하여 왔고, 또한 고의적으로 전시회에서의 작품판매를 게을리한 후 팔리지 않은 작품들을 3분의 1 이하의 가격으로 매수한 다음 천천히 제값으로 판매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피고인이 위 김

에게 건네준 민사소장의 작품횡령부분(수사기록 제46정)을 보면, 피고인이 이 에게 준 613호의 작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고, 위 김 은 이를 근거로 하여 이 이 피고인의 작품을 편취하였다고 기사를 쓴 것으로 보이는 바, 결국 이 부분에 피고인의 죄책여부는 위 613호 작품을 이 이 과연 횡령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이를 이 이 횡령하였다고 믿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이 점에 관한 한 공판기록 제29정에 편철된 전속계약서의 기재, 수사기록 제 77정에 편철된 내역서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의 진술, 검찰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의 이 및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이 간의 전속계약시 이 은 피고인에게 생활비로 매월 금 1,000,000원을 계약기간 5년동안 계속 지불하고, 전시회를 개최하여 주는 등 후원을 하되, 이에 대한 보상조로 피고인은 위 이 에게 연 1,000호의 작품을 무상으로 인도하여 주기로 약속하였고, 위 613호는 무상제공하기로 약속한 위 1,000호의 일부라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이 이 위 작품들을 횡령한 것은 아니고, 이러한 사실을 계약당사자인 피고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이 이 피고인의 전시회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원심은 이 이 고의로 피고인의 타 화랑에서의 전시회 개최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공판기록 제63정에 편철된 1991. 3. 8.자 통고서, 제412정에 편철된 1992. 1. 13.자 통고서의 각 기재에 당심 증인 검찰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의 이 및 피고인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이 과의 불화가 생긴 후 피고인이 1990. 6. 15.경 전속계약 해지통고를 한 후 1991. 7. 26.부터 같은 해 8. 6.까지 위 박 경영의 강남 현대화랑에서 전시회를 가지려고 팜플렛을 배포하는 등 전시준비를 다하였으나, 위 이난영이 위 박 에게 위 피고인과의 전속계약이 계속중임을 이유로 위 전시회를 개최하면 그에 대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하여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한 위 박 가 갑자기 위 전시회를 열지 않기로 취소하는 바람에 전시회가 개최되지 못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민사판결에서 피고인과 이

과의 전속계약이 1990. 6. 30.자로 해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까지 따져볼 필요없이 피고인으로서의 위 전시회가 위 이 의 방해로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경험칙상 당연하고, 이러한 판단을 위 김 기자에게 말한 것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고 보도케 하였다고 볼 수는 도저히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 및 사실오인 주장 중 비방목적부분, 판매대금부분, 편취부분은 모두 그 이유 없으나, 사실오인 주장 중 재료비부분 및 방해부분 주장은 그 이유있는 바,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범위내에서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당원은 나머지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필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미술작가인 바, 무명작가시절인 1988. 7. 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미화랑 대표인 피해자 이 과 1993. 7. 30.까지 5년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월 10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으로 작품활동을 후원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작품전시 및 판매 일체를 미화랑을 통하여만 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4차례의 개인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중견작가로서 성장하게 되자 1990. 3.경 열린 동경아트엑스포 전시회에 피고인의 작품을 출품한 이후부터 위와 같은 전속계약에 불만을 품고 계약해지를 주장해오던중, 1991. 7. 26. 경부터 같은 해 8. 6.까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현대화랑에서 개인전을 개최하려다 피해자의 위 전속계약상 권리주장으로 개인전이 무산되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1991. 7. 27. 14 : 00 경 서울 중구 태평로 1의 61 소재 조선일보 문화부에 찾아가, 사실은 동경아트엑스포에서 피고인의 작품이 약 8,300여만원에 판매되어 그후 함께 정산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작품을 편취한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문사 문화부 기자인 공소외 김 에게 「1990. 3.경 동경아트엑스포에서 1억5,000만원의 작품판매대금이 생겼으나 3,000만원을 받았을 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작품을 부당하게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설명하고, 민사소송소장 사본, 전속계약서 사본 등의 보도자료를 교부하여 위 김 으로 하여금 1991. 8. 1.자 조선일보 11면에 위와 같은 허위의 기사를 게재하게 하여 그무렵 전국의 위 신문 독자들에게 보급되게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 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원심법정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원심법정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장호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원심법정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작성의 각 진술서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공판기록에 편철된 공소부재기이유서 사본(제338정), 피고인의 탄원서(제16정-28정), 전속계약서 사본(제29정), 판결문 사본(제199정-213정), 작품리스트 사본(제정)의 각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조선일보 신문기사 사본(제15정), 부산일보 신문기사 사본(제103정), 소장 사본(제46정), 내역서 사본(77정), 정산서 사본(10-12정), 출품명세서(제38정)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동기 등 정상참작)

무죄부분 :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범죄사실 중 모두 사실기재와 같은 경위로, 사실은 전속계약시 재료를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으며, 피고인이 타 화랑에서 개최하려는 전시회를 고의로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사 기자인 공소외 김 ○○에게 「이 ○○이 피해자가 대주기로 했던 재료를 처음 6개월동안만 대주는 등 후원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며, 다른 화랑에서 열릴 예정이던 피고인의 전시회를 방해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설명하여 위 김 ○○으로 하여금 1991. 8. 1.자 조선일보 11면에 위와 같은 허위의 기사를 게재하게 하여 그무렵 전국의 위 신문 독자들에게 보급되게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부분은, 앞서 항소이유의 요지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결국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음에 돌아가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된 판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는 단순 1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1993. 12. 2.

재판장 판사 양 태 종

판사 변 현 철

판사 오 종 윤

大法院 判決文

사 건 : 93도3535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 고 인 : 이

주거 서울

본적 경남

상 고 인 : 피 고 인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 12. 2. 선고, 93노1025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 선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1) 소론은, 요컨대, 출판물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출판자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명예훼손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출판물에 기사를 게재한 기자나 출판사 자신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책을 부담할 것이지 그 기사내용을 제공한 제보자에 대하여는 같은 죄의 죄책을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이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오로지 당해 신문의 편집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게재한 이상 이 기사의 게재는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60. 6. 8. 선고, 4292형상71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된 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기자에게 허위사실을 설명하고 보도자료를 교부하여,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신한 신문기자로 하여금 신문에 허위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론은 또한 이 사건 기사내용은 이미 민사소송을 통하여 주장되어 이에 대한 판결까지 선고된 상태에 있었고, 다른 일간신문에도 소개되어 세인의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므로, 뒤늦게 그와 같은 기사를 정리하여 다시 일간신문에 소개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새삼스

럽게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4. 12.

□

재판장 대법관 김 주 한

대법관 배 만 운

대법관 김 석 수

주 심 대법관 정 귀 호